

방송 통신 법률 상식

지상파 재송신



정수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yjung@shinkim.com

법무법인 세종(대표 김두식)은 2010년 12월 13일, 협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적 대응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디지털미디어 업체들에게 저작권, 계약, 보안 등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경우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케이블방송 업체들이 KBS 2 TV의 방송 송출을 2일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이로 인하여 1월 16일과 17일에 KBS 2 TV의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시청자의 수는 약 1,20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하는데,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이 문제를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케이블 방송사에는 송출 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린 책임을 묻고, KBS에는 수신료를 받고도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책임과 함께, 시청자들은 케이블 수신료와 KBS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권을 침해 당했다며 케이블 방송사와 KBS에 법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법적 규제의 구조를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방송법 제78조는 지상파의 재송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i)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TV), (ii) 위성방송사업자 (SkyLife, 다만 TU Media와 같은 위성 DMB는 제외)와 (iii)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KBS 1과 EBS가 행하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법 제78조는 IPTV 사업법 제21조에 의하여 IPTV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재송신제도는 중요 국영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어떠한 유료방송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KBS 1TV와 EBS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다. 이러한 의무재송신 제도 이외에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물론, 경인방송과 같이 경인지역에서만 방송을 할 수 있는 지상파 지역민방을 방송범위를 벗어나서 서울에 있는 케이블TV가 재송신할 수 있는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방송법 제78조 제4항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가 KBS 1과 EBS 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법 상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이 예전, 즉 2002년 방송법에서는 위성방송 등이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국내 위성방송사업자인 SkyLife가 사업초기에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을 막는 데에 이용

되었고, 이로 인한 SkyLife의 가입자 수 확보의 어려움이 당시 언론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아직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는 것으로 아는 분이 꽤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유료방송사업자는 마음대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저작권법 제85조에는 동시중계방송권이라는 권한이 있어 방송사업자는 자신이 방송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동시에 방송하는 것, 즉 재송신하는 것을 금지 또는 승인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케이블TV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사의 저작권집권인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지상파 방송사는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을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법원의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법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아직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오지는 아니한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동시중계방송권은 유료방송사업자가 KBS 1과 EBS를 재송신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르면 결국 케이블TV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재송신에 동의하지 않으면, 즉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상파를 재송신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과 재송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면 될 일이다. 특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특정 케이블TV업체는 현재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간접강제이행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현재 이러한 간접강제이행금이 100억 원에 가깝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업체들이 지상파 송출을 중단한 행위는 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에 의하여 비난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비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경우 모두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TV에 의한 재송신이 중단될 경우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오히려 시청자 수가 이전보다 감소할 수도 있고 케이블이 지상파 방송의 송출을 중단한 이후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설비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케이블TV도 마찬가지로 지상파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면 시청률 및 가입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결론은 이미 케이블TV는 지상파 방송을 계속하여 송신하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양자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하여 시청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해 온 것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참고로,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 방송이 가구당 280원, 케이블TV가 100원인데, 이를 연간 환산하면 약 950억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 누구라도 싸우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IPTV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지상파 방송사들과 가구당 280원 정도에 지상파 재송신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극적으로 타결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사업자들간의 지상파 재송신 대가는 이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IPTV와 지상파 방송사 간의 재송신 약정에는 최혜대우조항, 즉 지상파 방송사는 IPTV사업자에게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권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싼 가격에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재송신을 허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 앞으로 이 문제는 다시 IPTV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흥미로운 일이다. ☐